

# 심 사 보 고 서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9
----------	-----

2019. 10. 25.(금)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9년 10월 8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0월 18일

-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40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 ③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지원 : 650백만원

-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원금 손실 방지 및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426백만원) 지원
- 수도권 대학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에게 균등한 수혜 제공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월정부담금 일부(224백만원)를 장학기금으로 활용

### ④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 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37,971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 << 기관별 출연 개요 >>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충북연구원	- 정부 주요 정책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정책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400,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 수행을 위해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3항
3	충북인재양성재단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50,000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4	지방공기업평가원	- 평가원의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5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지원 지원 필요	137,971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3. 검토보고 요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음
- 각 기관별 관련근거에 의거 출연이 가능함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5개 기관 출연계획안은 적의 제출되었음

구분	관련 근거	비고
충북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나. 종합 검토의견

### ① 충북연구원

- 충북연구원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등 충청북도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충북연구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금사용 등으로 인해 자체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체재원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연금	13	16	17.3	20.0	27.5	27.5	31.4	36.5	44.0

###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행복도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균등분담금을 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중앙-지방간 상생균형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우리 도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연금	67	100	200	150	200	200	250

### <연구과제 수행 현황>

연도별	정책연구과제
2019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구축방안 연구
2018	충청북도 지역공동체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2017	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
2016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 MRO 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핵심지원시설 구축 방안
2015	충북도내 남부·북부권역 1개 시군을 중핵도시로 육성

### ③ 충북인재양성재단

-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사업,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확충사업 등 크게 3가지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재단운영 예산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47,196	5,000	5,700	6,100	5,000	5,550	5,745	5,780	5,730	620	620	694	657

### ④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 설립한 기관으로
- 시도별 재정지수(50%)와 공기업수(50%)를 감안하여 시도별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음

-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 임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합 계	2016	2017	2018	2019
180	60	60	60	60

**5]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11년 (설립)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b>도(A)</b>	<b>691</b>	<b>52</b>	<b>52</b>	<b>81</b>	<b>85</b>	<b>80</b>	<b>102</b>	<b>118</b>	<b>121</b>	<b>129</b>	
충북(B)	1,555	111	118	187	193	190	227	256	273	285	
<b>전국(C)</b>	<b>60,976</b>	<b>4,094</b>	<b>4,635</b>	<b>6,587</b>	<b>7,712</b>	<b>7,199</b>	<b>9,066</b>	<b>9,580</b>	<b>12,102</b>	<b>10,843</b>	
비율	A/C	1.13%	1.27%	1.12%	1.23%	1.10%	1.11%	1.13%	1.23%	1.00%	1.19%
	B/C	2.55%	2.71%	2.55%	2.84%	2.50%	2.64%	2.50%	2.67%	2.26%	2.63%

※ '11~'12년 :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출연  
 '13년부터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출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279
----------	-----

제출연월일 : 2019년 10월 8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기관별 출연 개요

연 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충북 연구원	- 정부 주요 정책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정책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재)충북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400,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 수행을 위해 (재)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
3	충북 인재양성 재단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50,000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4	지방 공기업 평가원	- 평가원의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5	한국 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필요	137,971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3. 주요내용

####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40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 행정 및 지역 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 ③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지원 : 650백만원

-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원금 손실 방지 및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426백만원) 지원
- 수도권 대학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에게 균등한 수혜 제공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월정부담금 일부(224백만원)를 장학기금으로 활용

#### ④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 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37,971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붙임 1

## 1] 충북연구원

### < 출연 계획 >

<b>사 업 명</b>	충북연구원 운영	<b>출자·출연금</b>	4,400,000천원
<b>출자·출연 기 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관 명 : (재)충북연구원</li> <li>○ 대 표 : 정초시</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li> <li>- 인 력 : 정원 39명(현원 35명)</li> <li>- 주요사업 : 지역 현안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li> </ul> </li> </ul>		
<b>사 업 내 용</b>			
<b>사업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0. 1. ~ 12.</li> <li>○ 사업내용 : 충북연구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li> <li>○ 출연금액 : 4,4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운영 4,000백만원('19년 동일)</li> <li>- 특별연구조직(공공투자분석센터) 400백만원('19년 동일)</li> </ul> </li> </ul>		
<b>출자·출연 필 요 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수입 감소, 이월금 감소 등 수입 감소 예상</li> <li>○ 연구원의 안정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li> </ul>		
<b>근거법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li> </ul> </li> <li>○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li> </ul> </li> </ul>		
<b>검토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싱크탱크로서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활발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li> <li>○ 특히, 연구원 청사 신축에 기금사용과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자체세입 감소와 충북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출연규모를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li> </ul>		

<b>주관부서</b>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오세동	장형석	민은경	220-2123

###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043-220-1143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홈페이지 : www.cri.re.kr			
주요연혁	- 1990.05.15.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 1994.12.27.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 2011.03.24.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 2016.04.20. 충북연구원 명칭변경			출연기관	충청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19.10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0		35		65			
임원 (‘18.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		임기			
	이사장	○○○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북연구원장		재임기간			
	선임직이사	○○○	충북지역개발회 회장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청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청풍로펌 변호사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미래농어촌개발연구원 대표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前충북대학교 총장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前청주상공회의소 회장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세명대학교 대학원장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2017. 09. 01. ~ 2020. 08. 31.			
	당연직감사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재임기간			
선임직감사	○○○	공인회계사		2017. 09. 01. ~ 2020. 08. 31.				
주요기능	-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자본금(기금) (단위:백만원)		2,159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16,408	
	일반 회계	예산액	9,671	11,514		5,753	부채	391
		지자체 지원액	7,945	3,649		4,400	자본	16,017
2018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8,923			8,784		139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출판물 판매 대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출연 계획 >

<b>사 업 명</b>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b>출자·출연금</b>	250,000천원
<b>출자·출연 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관 명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li> <li>○ 대 표 : 윤태범</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li> <li>- 인 력 : 85명</li> <li>- 주요사업 : 지역 현안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li> </ul> </li> </ul>		
<b>사 업 내 용</b>			
<b>사업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0. 1. ~ 12.</li> <li>○ 사업내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발전 연구사업 지원</li> <li>○ 출연금액 : 250백만원('19년 동일)</li> <li>※ 전국 17개 시·도 공동 출연 : 각 250백만원(세종시 150백만원)</li> </ul>		
<b>출자·출연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 수행</li> </ul>		
<b>근거법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li> <li>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li> </ul>		
<b>검토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각 시도는 연구원 운영비, 인건비, 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17개 시·도 공동 출연</li> <li>○ 중앙-지방간 상생·균형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li> <li>○ 특히 지방의회 공동세미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세미나, 지방의원 연찬회 등 광역 시·도 지방분권 정책지원을 위해 출연규모를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li> </ul>		

<b>주관부서</b>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오세동	장형석	민은경	220-2123

## < 출연기관 현황 >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전화번호 : 033-769-9913			
					홈페이지 : www.krila.re.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4. 9 지방행정연구소 개소</li> <li>- 1986.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칭</li> <li>- 1986.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정</li> <li>- 2002, 2004 경영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li> <li>- 지방자치단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li> </ul>			출연기관	출연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			
인원현황 (19.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무기)			
	90		81		9			
임원 (19.9월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원장	윤태범	대통령지문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		3년(2018.02.06~2021.02.05)			
	당연직이사 (비상임)	2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4)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자치분권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li> <li>- 광역시·도(17) : 기획관리(조정)실장</li> </ul>		당해직위 재임기간			
	임의직이사 (비상임)	7인	관련 학계 및 분야의 저명인사		2년(2018.02.27~2020.02.26)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li> <li>-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평가 및 연구</li> <li>-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li> <li>-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li> <li>-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사업 등</li> </ul>							
자본금 (단위:백만원)		1			출연액 (단위:백만원)		51,173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58,146
	일반 회계	예산액	8,791	9,936	10,284		부채	6,253
		지자체 지원액	3,300	3,300	4,150			
	특별 회계	예산액	5,944	9,710	10,985		자본	51,893
지자체 지원액		-	-					
2018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6,338			14,722		1,616		

## 관계법령 발취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제3조(출연금)

-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충북인재양성재단

#### < 출연 계획 >

<b>사 업 명</b>	<b>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b>	<b>출자·출연금</b>	650,000천원
<b>출자·출연 기 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관 명 : 충북인재양성재단</li> <li>○ 이 사 장 : 이 시 중</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li> <li>- 인 력 : 5명</li> <li>- 주요사업 : 장학사업</li> </ul> </li> </ul>		
<b>사 업 내 용</b>			
<b>사업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li> <li>○ 사업내용 : 인재양성재단 운영비, 수도권장학금, 도내대학장학금</li> <li>○ 출연금액 : 6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재양성재단 운영비 : 426,000천원(인건비 255,000천원, 경상비 171,000천원)</li> <li>- 수도권장학금 : 180,000천원(2,000천원 × 90명)</li> <li>- 도내대학장학금 : 44,000천원(2,000천원 × 20명)</li> </ul> </li> </ul>		
<b>출자·출연 필 요 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재단 운영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li> <li>※ 시·군 출연금 중단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재단운영비 부족분 계상</li> </ul>		
<b>근거법령</b>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b>검토인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장학사업과 함께 대학인재 재능나눔, 고교생 진로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높이고 있음</li> <li>- 장학금 지급(연 1,106여명, 1,449백만원)</li> <li>- 장학사업(대학인재 재능나눔 등 4개 사업. 연 590여명, 115백만원)</li> <li>※ 장학기금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2008년부터 도 50억원, 시·군 35억원을 출연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16년부터 시·군 출연이 불가함</li> <li>( '19. 9. 9. 현재 적립금 : 802억 43백만원)</li> <li>⇒ 이자율 하락과 시·군 출연 중단으로 현재의 장학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재단 운영비 출연 불가피</li> </ul>		

<b>주관부서</b>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오세동	박선희	이중호	220-2132

###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화번호 : 043-224-0221 홈페이지 : www.chrdf.or.kr			
주요연혁	- '08. 2월 설립등기 - '19. 9월 재단기금 802억 돌파(잔액기준)			기관형태 (출자,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9.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0명			
임원 ('19. 9월 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당연직)	이OO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이사(당연직)	김OO	충청북도교육감		재임기간			
	"	한OO	청주시장		재임기간			
	"	조OO	충주시장		재임기간			
	"	이OO	제천시장		재임기간			
	"	정OO	보은군수		재임기간			
	"	김OO	옥천군수		재임기간			
	"	박OO	영동군수		재임기간			
	"	홍OO	증평군수		재임기간			
	"	송OO	진천군수		재임기간			
	"	이OO	괴산군수		재임기간			
	"	조OO	음성군수		재임기간			
	"	류OO	단양군수		재임기간			
	"	이OO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재임기간			
	"	안OO	충청북도 행정국장		재임기간			
	"	맹OO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재임기간			
	"	박OO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재임기간			
	이사(선임직)	김OO	원건설 회장		'18.04.03 ~ '20.04.02			
	"	이OO	명정보기술 대표이사		'18.04.07 ~ '20.04.06			
	"	정OO	신한은행충북본부장		'18.04.03 ~ '20.04.02			
	"	김OO	충북농협지역본부장		'18.04.03 ~ '20.04.02			
	"	오OO	대신정기화물회장		'18.04.19 ~ '20.04.18			
	"	박OO	前 충원고등학교 교장		'18.04.19 ~ '20.04.18			
	"	이OO	충북대학교 교수		'18.04.03 ~ '20.04.02			
	"	조OO	청주병원 원장		'19.03.08 ~ '21.03.07			
	"	이OO	前 대성중학교 교장		'19.03.08 ~ '21.03.07			
	"	류OO	대한변호사협회 충북협회장		'19.04.29 ~ '21.04.28			
	감사(당연직)	오OO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재임기간			
	감사(선임직)	변OO	한빛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8.09.06 ~ '20.09.05			
주요기능	우수 인재 발굴·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자본금 (단위:백만원)		76,5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79,779	
	일반 회계	예산액	6,616	6,651		7,341	부채	476
		지자체 지원액	620	694		657	자본	779,303
2018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265			2,071		1,194		

## 관계법령 발취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제8조(출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4 지방공기업평가원

### < 출연 계획 >

<b>사업명</b>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b>출자·출연금</b>	60,000천원	
<b>출자·출연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지방공기업평가원</li> <li>○ 대표 : 박동훈</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li> <li>- 인력 : 40명(이사장1, 상임이사1, 전문직 24, 행정지원직 14)</li> <li>-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지도, 자문, 사업타당성, 정책연구·교육 등</li> </ul> </li> </ul>				
<b>사업내용</b>					
<b>사업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0. 1~12월</li> <li>○ 사업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li> <li>○ 출연금액 : 6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재정력지수(50%) 및 평가대상 공기업수(50%) 감안 전국 시도별 배분</li> <li>* 17개 시도 출연금액 : 1,014백만원</li> </ul> </li> </ul>				
<b>출자·출연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평가원의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각종 지원사업 추진</li> </ul>				
<b>근거법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li> <li>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li> </ul>				
<b>검토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적 연구기관으로서, 각 시도는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li> <li>○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컨설팅·사업타당성검토 등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li> <li>○ 특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은 자치단체에서 이사5명(시도별 순번제 위촉)이 포함된 이사회(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감독 가능</li> </ul>				
<b>주관부서</b>	예산담당관	소속부서장	팀장	담당주무관	전화
		신성영	신정섭	김성준	220-2242

##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전화번호 : 02-3489-2700		
					홈페이지:www.erc.re.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li> <li>- 1994.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li> <li>- 2000. 1 재)한국자치경영협회로 명칭 변경</li> <li>- 2002. 9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명칭 변경</li> <li>- 2011.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 변경</li> <li>- 2016. 6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변경 및 법정기관화</li> </ul>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	
인원현황 (‘18. 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8명		38명		-		
임원 (‘19. 9월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의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박OO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2017. 1.20 ~ 2020. 1.19		
	상임이사	김OO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		2016. 11.24 ~ 2019. 11.23		
	당연직이사 (비상임)	6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1) : 지방경제지원관</li> <li>- 광역 시·도(5) : 기획관리(조정)실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직위 재임기간</li> <li>- 광역 시도 윤번제 (2년임기)</li> </ul>		
	위촉직이사 (비상임)	정OO	서울대 환경공학부 교수		2017. 5.12~2020. 5.11		
		최OO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2017. 5.12~2020. 5.11		
		김OO	한국공기업학회 총무기획위원장		2017. 5.12~2020. 5.11		
		박OO	한국법학회 회장		2017. 5.12~2020. 5.11		
감사(비상임)	윤OO	이현회계법인 감사본부장		2017. 5.12~2020. 5.11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공기업의 설립 및 투자타당성 검토</li> <li>-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li> <li>-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훈련 등</li> </ul>						
자본금 (단위:백만원)		3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11,92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19,030
		예산액	15,606	14,051		14,933	부채
	일반회계 지자체 지원액	1,008	1,008	1,014		자본	17,402
2018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692				9,867		179

## 참고

##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시·도 출연금 배분기준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14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75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b>2</b>	<b>0.5~0.7이하</b>	<b>30</b>	<b>2</b>	<b>16~25</b>	<b>30</b>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71, 공기업 수 평균 : 22.1(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19	2020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b>합 계</b>	<b>1,020</b>	<b>1,014</b>	<b>-6</b>	<b>10.060</b>	-	<b>516</b>	<b>375</b>	-	<b>498</b>
서울특별시	78	78		1.146	4	42	31	3	36
부산광역시	60	60		0.778	3	36	9	1	24
대구광역시	60	54	-6	0.691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0.841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0.582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0.565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0.769	3	36	7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1.099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0.393	1	24	27	3	36
충청북도	60	60		0.511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0.605	2	30	31	3	36
전라북도	54	54		0.409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0.403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72		0.542	2	30	38	4	42
경상남도	72	72		0.726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0.5	18	-	0.5	18

## □ 지방공기업법

###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⑥ 이사장은 이사회를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7.7.26.>
-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

## 5 한국지방세연구원

### < 출연 계획 >

<b>사 업 명</b>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	<b>출자·출연금</b>	137,971천원		
<b>출자·출연 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li> <li>○ 대 표 : 공석</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li> <li>- 인 력 : 76명(현원 65, 파견공무원 등 11)</li> <li>- 주요사업 :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li> </ul> </li> </ul>				
<b>사 업 내 용</b>					
<b>사업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0. 1. ~ 12.</li> <li>○ 사업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조사·교육사업 지원</li> <li>○ 출연금액 : 137,971천원(8,495천원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동사업임</li> </ul> </li> </ul>				
<b>출자·출연 필요성</b>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b>근거법령</b>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b>검토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 반영이 필요함</li> <li>○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개선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li> </ul>				
<b>주관부서</b>	세정담당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종빈	전도성	이지영	220-2755

# < 출연기관 현황 >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26		
					홈페이지 : ww.kilf.re.kr		
주요연혁	2011.2 설립등기, 2011.4 연구원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19.6월기준)	계		현원		정원의 인원		
	76명		65명 (부원장1, 연구직37, 관리직2, 전문직2, 사무직22, 시설직1)		11명 (위촉연구원2, 행정원1, 파견공무원8)		
이사회명단 (19.6월기준)	직책	성명	직함		임기		
	이사장	허성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 22. ~ 2020.12. 21.		
	부이사장	황명선	충청남도 논산시장		2019. 2. 28. ~ 2020. 2. 27.		
	원장	(공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사	김하균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9. 2. 28. ~ 2020. 2. 27.		
	이사	이용석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2019. 2. 28. ~ 2020. 2. 27.		
	이사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019. 2. 28. ~ 2020. 2. 27.		
	이사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019. 2. 28. ~ 2020. 2. 27.		
	이사	박상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2019. 2. 28. ~ 2020. 2. 27.		
	이사	김항섭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2019. 2. 28. ~ 2020. 2. 27.		
	이사	윤여일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2019. 2. 28. ~ 2020. 2. 27.		
	이사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9. 2. 28. ~ 2021. 2. 27.		
	감사	김영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노홍래	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		2018. 2. 28. ~ 2020. 2. 27.		
주요기능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연금액 (단위:백만원)	68,756 (설립이후 '19년까지 출연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18,188 (자산 총액)
	예산액	9,986	13,718	13,163		부채	4,45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7,570	12,102	10,844		자본	13,732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196			8,633		2,563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